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71

발의연월일 : 2024. 12. 3

발의자 : 박덕흠 · 김선교 · 구자근
 강승규 · 신성범 · 정희용
 김정재 · 이종배 · 권영진
 고동진 · 김예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중앙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의 재지정 요건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기존 업체들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 때문에 서울 가락시장의 경우 5개 도매시장법인이 시장 개설 이후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으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16년간 수수료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적됨.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82조).

또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관련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하되”를 “공모의 방식으로 지정하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지정절차와”를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로, “지정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18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도매시장 개설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단,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지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권익보호, 농수산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법인별 채용규모,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보호에”를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로, “취소할 수 있으며”를 “취소하여야 하며”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⑥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매매방법) (생략)

<신 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② (생략)

③ 제77조에 따른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 개

⑧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할 때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 권익보호, 농수산
물 도매유통 발전을 위하여 필
요한 지정조건을 볼일수 있다.

⑨ ----- 지정 및
재지정 절차와 ----- 필요
한 -----.

제32조(매매방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법인별 채용규모, 전담인력의 자격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3) _____

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신 설>

----- 취소하여야 하며,

----- 취소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개설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신규로 지정할 수 있다.